

|       |            |
|-------|------------|
| 의안번호  | 2207859    |
| 의 퇴 인 | 이용우 의원     |
| 회 답 일 | 2025.2.21. |
| 추계번호  | 25B0614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1항)<br>7. “통상임금”이란 재직, 근로기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br>조건에 준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소정(所定)근로 또는<br>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br>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br>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조(정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br>추계가 어려움 |

### 2. 상세 사유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sup>1)</sup>,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6조) 등 수

####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당<sup>2)</sup>이나 「고용보험법」상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임

- 개정안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재직, 근로기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 성과 관계없이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통상임금에 근거한 재정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사업대상자의 통상임금이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그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 급여<sup>3)</sup>와 육아휴직 급여<sup>4)</sup>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통상임금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등

3)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남 희 | 김신애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남 희 | 02-6788-3737 | nhee@na.go.kr |